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629

발의연월일 : 2022. 9. 29

발 의 자:김예지·김선교·김승수

박수영 • 배준영 • 안철수

이채익 • 이태규 • 최혜영

하태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독서소외인'으로 정의하며,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독서는 여전히 주요 정보 습득 수단으로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독서소외인은 독서 활동에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이 문자로 표현된 자료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독서권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 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독서소외인의 독서접근성 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독서권"이란 독서 자료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독서소외인 및"을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 및"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접근성 제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이 독서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독서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강구 및 독서소외인의 독서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독서권"이란 독서 자료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및 이
	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u>3.·4.</u> (생 략)	<u>4.·5.</u>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독서소외인 및</u> 소외지역의	3.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u>및</u>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8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접근
	성 제고)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독서소외인이 독서 활
	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독서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시책 강구 및 독서

 소외인의 독서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

 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